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건 강 증 진 과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발	의	자	김영태	의원	외	1인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태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김영태·김정도 의원(2인)

찬 성 자: 김영길·박세채·안주찬·이상호

허민근 의원(5인)

1. 제안이유

온라인 불법 도박의 확산으로 청소년의 도박중독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예방교육·상담 및 치료 등 청소년 도박 중독 대상 특화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조기 개입과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4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2) 「청소년 기본법」 제8조
- 3) 「청소년 보호법」 제5조, 제33조, 제34조
- 나. 부서검토: 건강증진과 의견제출(붙임)
-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 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시행계획이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소년 도박중독 특화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	
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	
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u>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u>
	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시
	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2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청소년 도박중독 특화사업
<u>5</u> . (생 략)	<u>6</u> . (현행 제5호와 같음)

관계법령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
 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 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

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불안·고독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 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 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유 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 점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청소년 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관

- 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단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종합대책의 수립·시행과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의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청소년의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예 방 및 해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2.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 3. 청소년의 매체물 이용과 관련한 상담 및 안내
 - 4.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치료 등
 - 5.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
 - ② (생 략)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건강증진과

조 례 명 구마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토 사항
 - ㅇ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청소년 기본법」 제8조
 - 「청소년 보호법」 제5조, 제33조, 제34조
- □ 주요 사항
 - 정의 (안 제2조)
 - 시행계획 수립 등 (안 제4조)
- □ 검토 결과
 - 최근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 도박 노출이 증가하면서 중독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음
 - 당초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청소년 도박중독과 관련한 내용이 부재하므로 해당 개정 조례안에 따라 청소년 도박중독 특화사업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구미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치유 및 중독 폐해를 방지 하는데 기여
 - ㅇ 소요예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에 비용이 수반되나 예상되는 연평균 소요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함

4. 작성자

○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김민아(☎054-480-4168)